

나의 민원 인쇄하기

*인쇄 페이지 열람 시 인쇄 이력이 기록됩니다.

인쇄자 : 최윤정

[민원인입력사항]

신청번호	1AA-1706-131470	신청일	2017-06-15 11:25:44
신청인구분	개인		
신청인이름	최윤정		
연락처		휴대전화	010-2593-8712
주소	[06279]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78길 22, 106동		
진행상황통보방식	진행상황통지방식(전자우편, 휴대전화문자메시지), 민원답변통지방식(전자우편)		
이메일	funny8851@gmail.com		

[민원신청내용]

민원제목	방염대상건축물, 방염대상물품 질의
민원내용보기	<p>안녕하십니까 불철주야 민원고충 질의응답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p> <p>금월초 방염관련 질의를 하였으나, 추가 질의사항이 발생하여 다시 질의 올립니다. 기존 질의내용과 일부 반복되는 사항이 있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p> <p>1. 방염대상건축물 제외대상인 아파트 단지/부지 내에 주민편의시설이 아파트와 별동 (2층 건물)으로 존재합니다.</p> <p>이 주민편의시설에는 어린이집, 노인정, 회의실, 독서실, 휘트니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p> <p>이 때, 아파트 단지 내 주민편의시설 중 방염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아파트 단지 내 주민편의시설 중 어린이집, 노인정은 방염대상인가요?) (아파트 단지 내 주민편의시설 중 회의실, 독서실, 휘트니스는 방염대상인가요?)</p> <p>2. 지하 4층 ~ 20층 복합건축물 1개동이</p> <p>지하 2층 ~ 지하1층은 대형마트인 판매시설, 지상 1층 ~ 지상2층은 음식점, 카페 등 근린생활시설, 지상 3층은 주민편의시설 (어린이집, 노인정, 회의실, 독서실, 휘트니스), 지상 4층 ~ 지상 20층은 오피스텔로 사용되고 있습니다.</p> <p>11층 이상 건축물로 지상 4층 ~ 지상 20층의 오피스텔은 방염대상으로 생각되는데, 지하층 판매시설은 방염대상인가요? 지상 1~2층 근린생활시설은 방염대상인가요?</p>

지상 3층 주민편의시설 중 어린이집, 노인정은 방염대상인가요?

지상 3층 주민편의시설 중 회의실, 독서실, 휘트니스는 방염대상인가요?

3. 붙박이장, 시스템가구, 신발장 등 고정식 가구는 방염대상물품인가요?

4. 문틀, 문짝 등의 실내 문인 목창호는 방염대상물품인가요?

5. 신발장 등 고정식 가구에 연장되어 설치되는 PIX 판넬은 방염대상물품인가요?

6. 실내 문인 목창호에 연장되어 설치되는 거실 아트월의 PIX 판넬은 방염대상물품인가요?

다시 한번 기존 질의내용과 일부 반복되는 사항이 있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PIX 판넬 1.jpg

 PIX 판넬 2.jpg

[처리기관정보]

처리기관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소방정책국 소방산업과		
담당자(연락처)	임순재 (044-204-6199)		
접수일	2017-06-15 17:43:56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706-157214
답변일	2017-06-22 07:05:07		
답변내용	<p>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민안전처(소방산업과)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안내드립니다.</p> <p>2. 귀하의 민원내용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과 방염대상 물품"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p> <p>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p> <p>가. 어린이집(노유자시설)과 휘트니스센터(근린생활시설 중 체력단련장 또는 건축물 옥내의 운동시설)는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합니다.</p> <p>나. 층수가 11층 이상인 복합건축물은 층별 용도와 관계없이 전 층이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합니다.</p> <p>다. 가구류는 방염대상물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p> <p>라. 창호는 방염대상물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p> <p>마. 가구류를 제외한 연장 부분은 방염대상물품에 해당합니다.</p> <p>바. 창호를 제외한 아트월 등 연결된 부분은 방염대상물품에 해당합니다.</p> <p>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p>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임순재(☎ 044-205-7289, sjlim1434@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인쇄